

# Deloitte.



DELOITTE  
VIETNAM

Making an impact since 1991



## 조세 및 무역 뉴스

COVID-19 관련된 2021년 세무, 관세 및 출입국에  
관한 규정 요약

2021년 11월

# 목차

<b>1. 조세 및 관세 행정에 대한 규정 및 지침</b> .....	<b>3</b>
1.1. 세금 감면.....	4
1.2. 세금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5
1.3. 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에 대한 정책.....	7
1.4. 관세 절차.....	8
<b>2. Covid-19 관련된 인건비</b> .....	<b>15</b>
<b>3. Covid-19 관련된 기타 비용</b> .....	<b>22</b>
3.1. COVID-19 예방 및 통제를 위한 지원비용.....	23
3.2. CIT목적으로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23
<b>4: 출입국</b> .....	<b>24</b>
4.1. 일반 경우 의료 격리 기간 단축 .....	25
4.2.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 감염 후 완전히 회복된 개인에 대한 격리 기간 단축.....	25
4.3. 백신접종 완료 확인서/코로나 회복 증명서 확인.인정에 대한 지침 및 외교부에 의해 인정된 양식 목록 업데이트.....	25
4.4.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서 발급의 조건 완화.....	26



1:

# 조세 및 관세 행정에 대한 규정 및 지침

## 1.1. 세금 면제 및 감면

**CIT 및 VAT 30% 감면, 2021년 3분기 및 4분기 PIT 면제;  
Covid-19의 영향을 받는 기업과 개인을 지원하는 솔루션:**

이러한 규정에 따라 기업에게 2021년 면세 및 감면 지원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1년 과세연도 납부해야 하는 CIT 30% 감면: 총 매출이 VND 200 bil 미만이며 2019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모든 생산 및 사업 분야에서 적용된다. 기업은 분기별 일시적 납세 시 2021년 매출을 사전 예상하여 세금 30% 감면을 신청하도록 한다.
2. 다음의 상품과 용역에 대해 2021년 11월 및 12월 VAT 30% 감면: 물류, 숙박, 식음료, 관광 관련 서비스; 및 출판 제품, 영화,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서비스, 등
3. 2020년 및 2021년에 발생한 세금 납부액,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에 대한 **연체이자 면제**;
4. 가족 및 개인 사업자에 대한 2021년 3분기 및 4분기 세금 면제: Covid-19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생산 및 영업 활동을 하면 2021년 3분기 및 4분기에 발생한 모든 의무 세금(VAT, PIT, SCT, ...)이 면제된다. (소프트웨어 제품/서비스, 레크리에이션 디지털 제품/서비스 및 비디오 게임, 디지털 영화, 사진, 광고 제공의 경우 면제 대상에서 제외)

본 규정은 2021년 10월 19일부터 유효된다. 자세한 내용은 2021년 10월 31일 딜로이트 세무뉴스를 참조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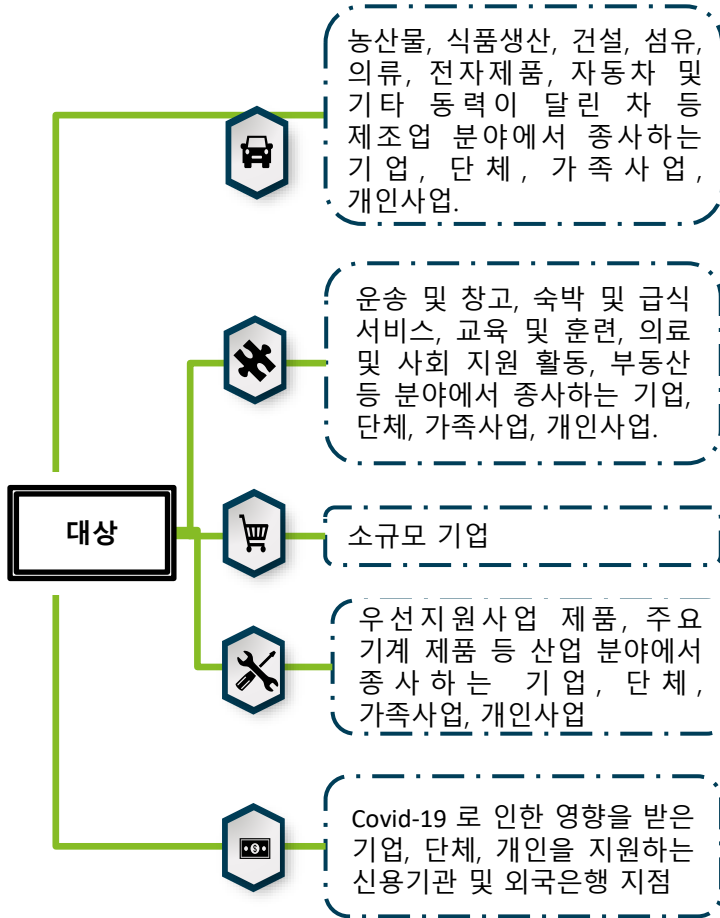
*(국회 상임위원회의 2021년 10월 19일 제406/NQ-UBTVQH15호 결의서)*

*(정부의 2021년 10월 27일 제92/2021/ND-CP호 시행령)*



## 1.1. 세금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2021년 04월 19일 정부의 제 52/2021/ND-CP 호 시행령에 따라 2021년 법인소득세 ("CIT") 및 부가가치세 ("VAT") 및 2021년 토지임대료 납부 기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한다.



VAT (수입VAT 제외)	신규 세금 납부 기한
월별 신고	
3/2021	20/09/2021
4/2021	20/10/2021
5/2021	20/11/2021
6/2021	20/12/2021
7/2021	20/12/2021
8/2021	20/12/2021
분기별 신고	
1분기/2021	30/09/2021
2분기/2021	30/12/2021
CIT	신규 세금 납부 기한
CIT 임시 신고 및 납세	
1분기/2021	30/07/2021
2분기/2021	30/10/2021
토지 임대	신규 세금 납부 기한
2021년 첫 번째 지급 기간	30/11/2021



## 1.2. 세금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cont.)



납세자는 세금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지만 격리기간 동안 (국무총리, 정부 사무실, 현지 유관기관, 국가당국에 의한 격리 통지결정에 따른 격리 기간을 포함) 납세신고서를 지연 제출하게 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 납세자는 본사 및 주소 (거주 및 임시 거주지)가 격리 및 봉쇄지역에 위치한 단체 또는 개인이다.
- Covid-19으로 인해 유관기관의 결정 및 통지에 따라 격리 중인 개인.

(호치민 세무국의 2021년 7월 19일 제6770/CTTPHCM-KK호 OL)



납세자는 본사가 격리 및 봉쇄지역 (Covid-19로 인한 국가당국에 의한 격리 통지결정에 따름)에 위치한 단체인 경우 납세신고서를 지연 제출하게 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하노이 시 세무국의 2021년 7월 29일 제29592/CTTPHN-KK호 OL)



### 세금 납부 기한 연장

제52/2021/ND-CP호 시행령에 따라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한 2021년의 세금 납부 연장 기간은 수입 단계의 VAT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은 제38/2019/QH14호 제63조 1항 a점 및 제3조 27항 a점에 따라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해 수입 단계에서 세금 납부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수입 단계에서 세금 납부 연장 절차는 제38/2015/TT-BTC호 시행규칙 제135조(제39/2018/TT-BTC호 시행규칙 제68조 1항에서 보완됨) 및 제06/2021/TT-BTC호 제11조의 규정을 준수한다.

(관세총국의 2021년 10월 11일 제4799/TCHQ-TXNK호 OL)



### 1.3. 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에 대한 정책

2021년 7월 1일 제68/NQ-CP 호 결의서에 따라, Covid-19 로 영향을 받은 기업 및 개인에 대해 지원 정책이 다음과 같다:

#### 산업 재해 및 질병 보험료 납입 감소

- **적용대상:** 사회보험 및 산업안전위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및 산업질병보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 및 질병보험기금에 기여하는 고용주;
- **기여율:** 사회보험 납입기준인 급여기금의 0%;
- **목적:** 고용주는 산업 재해 및 질병 보험료 납입 감소로 인해 얻은 전액을 노동자에게 COVID-19 예방 목적으로 지급한다.
- **적용기간:** 2021년 7월 1일 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 퇴직연금 및 유족기금 납입 일시 중단

- **적용대상:** 사회보험법 제2조에 규정된 의무적인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인 근로자 및 고용주;
- **조건:** 신청서를 제출하고 퇴직연금 및 유족기금에 충분히 납입했거나 2021년 4월말까지 일시 납부 중단하지만 신청 당시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수가 COVID-19 로 인해 2021년4월 대비 최소 15%가 감소된 공용주;
- **적용기간:** 고용주가 신청서를 제출한 달로부터 6개월동안 적용된다. 일시 중단기간이 끝나면 고용주 및 근로자가 퇴직연금 및 유족기금에 계속 납입하며, 일시 중단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음).

(총리의 2021년 7월 7일 제 23/2021/QD-TTg호 결정서)



## 1.4. 관세절차

### Covid-19 검사 키트 (kit test) 생산용 수입 자재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 절차

수입 관세가 면제되는 Covid-19 검사 키트 생산용 자재는 2021년 9월 30일 제1921/QD-BTC호 결정문에 첨부된 목록에 따라 결정된다.

면세 서류 및 절차는 제134/2016/ND-CP호 시행령 제31조 및 제18/2021/ND-CP호 시행령 제1조 14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수입신고서의 면세/감면코드 항목에서 코로나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수입 물품에 대한 수입 관세가 면제된다- 코드 XN502로 신고해야 한다. 기업은 Covid-19 검사키트 생산을 위한 자재 수입 절차를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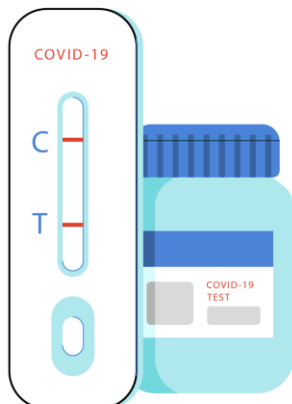
그러나 수입 후 수입 자재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목적 변경을 신고하고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관세총국의 2021년 10월 4일 제 4717/TCHQ-TXNK호 OL)

### Covid-19의 치료를 위해 수입 물품에 대한 VAT 및 수입 관세

회사의 수입 물품이 질병예방 및 치료용 의약품으로 확인되는 경우 VAT세율은 5%이다.

(관세총국의 2021년 9월 13일 제4390/TCHQ-TXNK호 OL)



베트남 단체 및 개인이 Covid-19 예방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 또는 보조금 지원과 같은 수입 관세 및 VAT 정책이 적용된다.

절차:

- 보건부, 성 인민위원회 및 성/시의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는 단체 및 개인의 요청에 따라 상품을 승인하는 공문을 공표하도록 한다;
- 관세당국은 수출입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 관세를 징수하지 않고,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률 및 제209/2013/ND-CP호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 절차를 수행한다.
- 재무부는 Covid-19 예방을 위한 수입 물품의 세관 서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유효 및 수행 기간:

- 본 결의문은 서명된 날부터 유효하다.
- 구체적인 물품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정책은 유관기관의 Covid-19 종료 통지서를 공표할 때까지 적용된다.
- 보건부, 성 인민위원회 및 성/시의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는 본 규정에 따라 수입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 물품의 사용을 할당하고 관리해야 한다.

(정부의 2021년 9월 11일 제106/NQ-CP호 결의문, 재무부의 2021년 9월 22일 제10947/BTC-TCHQ호 OL)



## 1.4. 관세절차 (cont.)

### 수입 관세가 면제되는 Covid-19 검사키트 생산용 7종 자재 추가

본 결정은 제155/QD-BTC호 결정에 따라 수입 관세가 면제되는 Covid-19 검사키트 생산을 위한 자재를 추가한다; 구체적으로 :

1. 알루미늄백 (Covid-19 검사키트 보관용)
2. 검사키트의 하단커버 (Covid-19 검사키트 조립용)
3. 검사키트의 상단커버 (Covid-19 검사키트 조립용)
4. Covid- 19 검체 채취용 튜브(Covid -19 검체 채취용)
5. 튜브 홀더(튜브 고정용)
6. 비인두 면봉(Covid-19 샘플 채취용)
7. 비강 면봉(Covid-19 샘플 채취용)

본 결정은 서명일부터 유효하며 유관기관이 Covid-19 종료를 공표하는 일자까지 적용된다.

(재무부의 2021년 9월 30일 제1921/QD-BTC호 결정문)

### Covid- 19 검사키트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 및 빠른 통관

본 공문은 Thu Do 투자 무역 관광 주식 회사가 보건부를 지원하기 위해 수입하는 3백만 개의 Covid-19 검사 키트에 대한 면세 및 신속한 통관에 대해 답변한다.

(관세총국의 2021년 8월 1일 제3837/TCHQ-TXNK호 공문)

### Covid- 19 예방 및 관리 지원을 위한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처리

공문은 Covid-19 예방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수입 물품에 대한 제106/NQ-CP호 결의문에 따라 관세 면제(수입, VAT)를 지침한다.

따라서, 제38/2015/TT-BTC호 시행 규칙 제16조 2항 (제39/2018/TT-BTC 호 시행 규칙 제1조, 5항에서 수정됨)에 명시된 수입 서류 외에 보건부, 성 인민위원회 또는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의 승인서 원본 1부도 필요하다.

수입신고서의 면세/감면/비과세 코드 대상에서 코드 XNK90 - 기타 상품 - Covid-19 예방 및 관리를 지원하는 수입 물품으로 신고된다.

제106/NQ-CP호 결의문의 유효일(2021년 9월 11일) 이전에 발생한 수입 물품의 경우 수입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납부된 경우, 과납부 세액은 제106/NQ-CP호 결의문 및 조세행정 법률 제 60조에 따라 처리된다.

(재무부의 2021년 9월 22일 제10947/BTC-TCHQ호 공문)

### 중고 구급차 수입 절차

1. 관리 정책 관련: Covid- 19 예방 및 통제를 위해 해외 파트너로부터 무상원조를 받은 중고 구급차는 호치민시가 제 15/CT-TTg호 지침 및 제 16/CT-TTg호 지침의 적용을 폐지할 때까지 수입이 허용된다.
2. 관세 절차: 세관 서류에는 긴급 요구 사항에 적합하는 수입 물품에 대한 세관 신고서 및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의 확인서가 포함된다.
3. 세관 절차 수행 장소: 기업은 2014년 관세 법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선택한다.
4. 전문적 검사: 세관 당국은 사용된 구급차의 통관 시 기업에 품질 인증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관세 총국의 2021년 9월 24일 제4606/TCHQ-GSQL호 공문)



## 1.4. 관세절차(cont.)

### Covid-19 기간동안 수입된 수입품에 대한 C/O 제출 기간 및 형식

- 특별우대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통관시 C/O가 제출하지 못한 경우 신고인이 수입 신고서에 C/O의 지연 제출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추후 C/O 유효기간 내에 보충적으로 신고하고 C/O를 제출할 수 있다.
- 수출국 관세당국에서 전자 서명 및 날인한 C/O의 발급을 통보하고, 해당 C/O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또는 기타 확인 방법을 제공한 경우, 관세당국은 이런 전자 서명 및 날인된 C/O를 인정한다;
- 수출국 관세당국에서 원본 C/O의 사진 또는 스캔본 사용을 통보하고, 해당 C/O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C/O의 사진/스캔본을 제공하거나 웹사이트 또는 기타 확인 방법을 제공한 경우, 관세당국은 이런 C/O의 사진 또는 스캔본을 인정한다. 신고인은 수입신고일로부터 180 일 이내에 C/O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재무부의 2020년 5월 27일 제 47/2020/TT-BTC 호 시행규칙)

### Covid-19 기간 동안 물품 보관 및 물품 보관 장소에 대한 검사

- 보관된 물품에 대한 검사는 제 38/2015/TT-BTC 호 시행규칙의 제 32 조, 제 5 항, 제 b.1.1호를 보완하는 제 39/2018/TT-BTC호 시행규칙의 제 1.19조에 따라 수행된다. 따라서, 관세총국으로부터 신규 통보가 발행될 때까지 보관된 물품에 대한 검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 물품 보관장소에 대한 검사는 제 38/2015/TT-BTC 호 시행규칙의 제 32 조, 제 5 항, 제 b.1.3 호를 보완하는 제 39/2018/TT-BTC호 시행규칙의 제 1.19조에 따라 수행된다. 따라서, 신고서가 최초로 신고된 관세당국에서는 물품 보관장소에 대한 검사를 일시 중지하고, 기업들에게 영상녹화장치를 통해 물품 보관장소의 온라인 이미지 제공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수행한다.

(관세총국의 2021년 7월 22일 제 3695/TCHQ-GSQL 호 OL)

### Covid-19 기간 동안 관세 절차 관련:

- 세관 신고인은 관세 전자정보 처리시스템을 통해 관세 신고서를 관세당국에 제출한다. 기타 절차는 온라인 공공서비스 시스템에서 수행한다;
- 격리기간 중 물품을 보관하거나 국경에 있는 관세당국은 물품에 대한 실제 검사를 실시하고 시스템에서 받은 검사결과를 사용하여 다음 단계에 절차를 수행한다;

(관세총국의 2021년 5월 27일 제 2547/TCHQ-GSQL 호 OL)



## 1.4. 관세절차(cont.)

### Cat Lai 항구의 화물 정체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총국은 통관 목적으로 Cat Lai 항구에서 다른 항구나 ICD로 이전되는 물품에 대한 조건과 감독 절차에 대한 지침을 호치민 관세당국에 안내했다.
- **유효기간:** 2021년 8월 2일부터 호치민 인민위원회가 제16호 조치의 이행을 중단을 발표하는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까지

(관세총국의 2021년 8월 02일 제 3847/TCHQ-GSQL 호 OL)

### 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필요한 서류의 하드카피를 디지털 서명이 있는 스캔 사본으로 대체하여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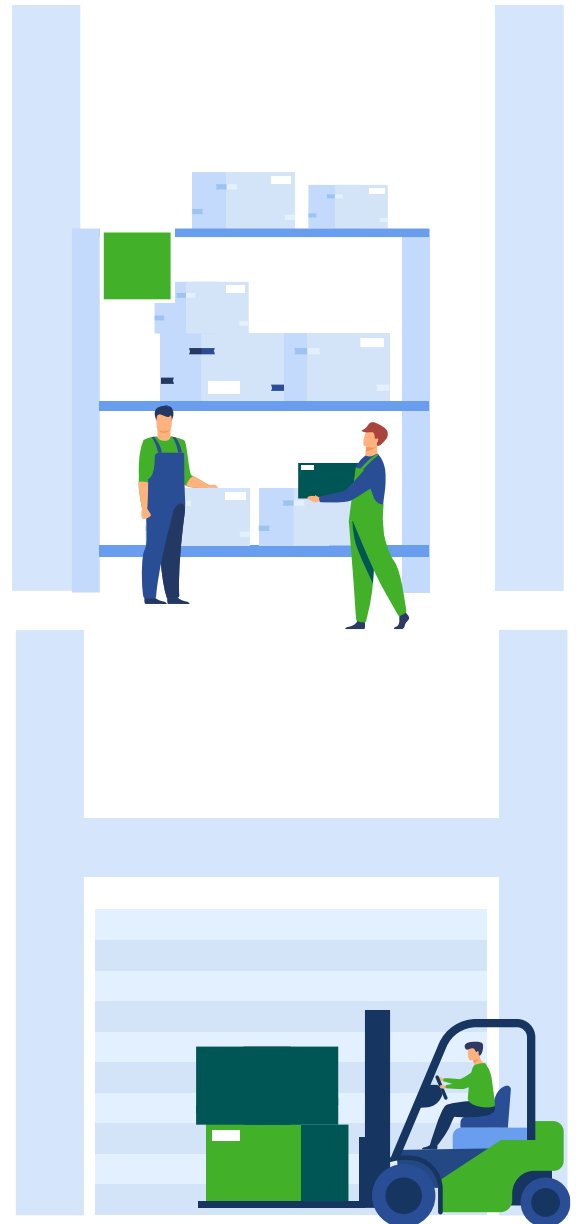
- 사회적 거리 기간 동안 통관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의 하드카피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스캔 사본(디지털 서명 필요)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기업들은 전자 세관신고서의 비고란(NOTE)에 해당 서류의 지연 제출을 신고하고,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본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 기업 또는 관할 관세당국의 위치가 봉쇄된 지역에 있는 경우, 봉쇄가 해제될 날로부터 05 영업일 이내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서류의 원본을 지연 제출하는 것에 대해 사례별로 관세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출 기한이 경과하였으나 원본 서류를 추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세당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거나 사후 세관심사를 수행한다.

(관세총국의 2021년 8월 11일 제 3980/TCHQ-GSQL 호 OL)

### Covid-19 예방을 위한 지원 물품의 통관 촉진

관세총국은 Covid-19 예방 및 통제를 위한 의약품, 백신 등의 수출입품 통관 절차에 대한 지침을 각 관세당국에 안내하였다.

(관세총국의 2021년 07월 29일 제 3794/TCHQ-GSQL 호 OL)



## 1.4. 관세절차 (cont.)

### 양식 D인 원산지 자율 증명의 스캔 사본 제출 허용

세관 당국은 신고자가 관세당국의 전자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첨부한 원산지 자율 증명 양식 D 및 전자 서명이 있는 원산지 자율 증명 양식 D의 스캔본을 승인한다.

세관 공무원은 아세안 웹사이트 (<http://web.awsc.asean.org>)에서 수출 업체 정보를 기반으로 원산지 자율 증명 서류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세관 서류 및 물품의 물리적 검사 결과(있는 경우)와 비교한다.

(관세총국의 2021년 8월 25일 제4162/TCHQ-GSQL호 공문)

### Covid - 19기간 동안 수출입 통관 간소화

관세국 및 지국에 전염병 예방을 강화하고 전염병 기간 동안 물품의 수출/수입을 촉진할 것을 요청한다.

제16호 지시에 따른 사회 격리중인 지역에서 컨테이너 실제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스캐너로 사전 검사를 수행한 후 검사 결과가 의심스러운 경우 세관 직원이 물리적 검사를 수행한다.

(관세총국의 2021년 8월 31일 제 4251/TCHQ-VP호 공문)

### 산업통상부는 항구의 보관·창고 수수료 감소 요청

산업통상부는 Covid-19 (세계적 대유행)의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물류, 항구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회, 기업에게 물류비, 창고비 감소를 고려하도록 요청했다.

(산업통상부의 2021년 8월 10일 제4812/BCT-XNK호 공문)

### Covid-19 기간 동안 C/O 양식 KV, AK의 스캔 또는 사진 허용

관세총국의 발표에 따르면 Covid-19기간 동안 한국에서 발행한 KV 및 AK의 C/O 양식 스캔 또는 사진은 C/O의 하드카피를 대체하기 위해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KV 및 AK의 C/O 양식 스캔 또는 사진은 전자 세관 신고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관세총국의 2021년 8월 17일 제4059/TCHQ-GSQL호 공문)



## 1.4. 관세절차 (cont.)

### 수입 의약품 및 의약품 자재의 빠른 통관 촉진

특히 Covid-19 대유행 기간 동안 물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사람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신속한 통관을 촉진하기 위해 관세 총국은 도시 및 지역의 관세국에게 다음과 같은 여러 솔루션을 구현하도록 지시하는 여러 공문을 발표하였다:

1. 통관 시 제조사의 전자 서명이 있는 의약품 및 의약품 자재에 대한 시험 보고서 허용
2. 특별한 보관 요구사항이 있는 물품의 기업이 제안한 창고에서 물리적 검사를 허용한다(예: 약품, 백신, 바이오 제품 등은 2°C-8°C의 보관 온도가 필요함).
3. 2021년 8월 1일 이후 수입 신고된 수입 물품을 확인하기 위해 관세 당국은 현행 규정에 따른 관세 전자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자동 검사 채널 구분 및 검사 지침에 따라 세관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의약품 및 의료 장비에 대한 통관 절차를 약학법 및 관세법에 따라 신속하게 수행한다.

(관세 총국의 2021년 9월 8일 제4330/TCHQ-POPEBL호 공문)

### Hai Duong 관세지국이 관리하는 보세 창고에서 통관 절차 및 통관 감독을 수행하기 위한 지침

Hai Phong 관세국은 Hai Duong 관세지국에게 보세 창고(세관 구역)에 관리 담당자들을 충분히 배치하여 수입 검문소에서 보세 창고로 운송되는 수입 물품을 접수, 검사 및 감독을 수행하고 통관 절차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지시한다. **기업은 관세지국 본부에 승인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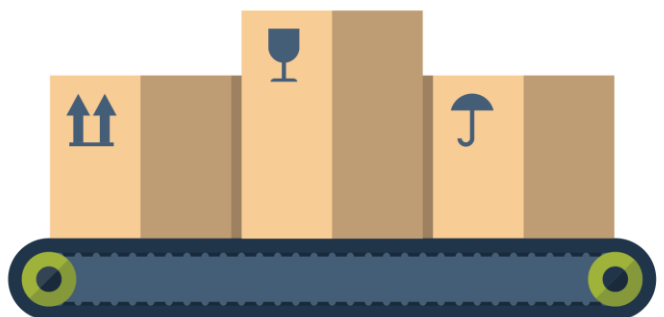
기업 보세 창고에서의 검사 및 감독은 Covid-19 예방에 관한 정부 및 지방 당국의 지시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관세 총국의 2021년 9월 9일 제4346/TCHQ-GSQL호 공문)

### 긴급한 경우 Covid-19의 예방 및 통제를 위한 의료기기 수입 및 유통번호 발급에 관한 시행규:

- B형 의료기기에 적용되는 기준 공표
- C형 및 D형 의료기기 유통등록증명서 발급

(보건부의 2021년 9월 16일 제13/2021/TT-BYT호 시행규칙)



## 1.4. 관세절차 (cont.)

### Covid-19 기간 동안 사후 심사("PCA") 수행:

Covid-19 기간 동안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총국은 전염병이 통제될 때까지 계획된 PCA 및 위험 관리를 통한 PCA를 포함하여 2021년의 PCA 계획을 시/도 관세당국에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

기업이 위반 징후가 보여 PCA 대상인 경우 심사 부서는 해당 유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세총국의 2021년 10월 11일 제4797/TCHQ-KTSTQ호 공문)

### 사회적 거리 상황에서 수입 물품이 항구에서 적체되는 경우 요구되는 관세 감독

해당 시행규칙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국경검문소 사이에서 이동한 물품이 항구에서 적체되는 경우의 관세 절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따라서 기업은 적체된 물품을 다른 항구나 내륙 항구, ICD 항구에 보관하도록 옮길 수 있고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제23/2019/QD-TTg호 결정문에 따라 수입 국경검문소에서 통관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 물품 목록에 없는 물품
- 만재화물;
- 세관 신고를 하지 않은 물품;
- 당국의 요청에 따라 모니터링, 검사 및 처리 목록에 없는 물품

항구는 적재 능력의 90% 이상 수입물품이 쌓여 있는 경우 적체되어 있거나 적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해당 시행 규칙은 서명한 날부터 유효하다.

### Covid-19 영향으로 인한 관세 과태료 면제 사례 안내

관세총국은 2020년 6월 3일 제3569/TCHQ-PC호 공문에서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한 관세 위반에 대한 제재 면제에 대한 지침이 있음을 밝혔다.

Covid-19 기간 동안 모든 관세 위반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위반으로 간주되어 제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은 허용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지만 위반 행위를 방지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제재가 면제된다.

관세총국은 Covid-19의 영향 또는 국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과태료 면제는 2012 행정 위반 처리에 관한 법규 규정 (제2조, 제11조), 제128/2020/ND-CP호 시행령 (제6조) 및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재고하여 "불가항력 사건"에 대한 규정을 적절하게 적용하도록 한다.

(관세총국의 2021년 9월 15일 제4428/TCHQ-PC호 공문)

### COVID-19 예방 및 통제 기간 동안 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 및 수출 촉진

Covid-19 기간 동안 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해 국무총리는 전자 통관을 촉진하고 농산물 수출의 신속한 통관을 지역 세관에 요청했다.

또한 국무총리는 농업개발부에게 직접 평가 대신 온라인(품질)평가를 연구·적용하거나, 농산물의 허가·증명서 등의 유효기간을 최대 6개월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

(국무총리의 2021년 9월 21일 제26/CT-TTg호 지침)

(재무부의 2021년 9월 30일 제82/2021/TT-BTC호 시행 규칙)

2.

## Covid-19 관련된 인건비

*다음 페이지의 요약 내용은 세무총국과 지방 세무국에 의해 발행된 현행 지침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신규규정이 발행되어 이전 규정과 부딪치거나 이전 지침을 무효화할 경우 납세자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당 지침의 이행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 COVID-19 검사 비용

**PIT:** 직원에 대한 SARS-CoV-2 검사비용은 직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복리후생 비용으로 간주되며 **PIT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Hai Phong 세무국의 2021년 7월 5일 제1609/CTHPH-TTHT호 OL)

**직원에 대한 Covid-19 백신접종 비용**은 공제 가능한 조건에 모두 충족하며 비공제대상 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CIT 과세소득 확정시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간주된다.**

(세무총국의 2021년 8월 3일 제2921/TCT-CS 호 OL)

**직원에 대한 Covid-19 검사 비용**은 직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복리후생 비용으로 간주되며 인보이스 및 관련 증빙을 갖춘 경우 **CIT 과세소득 확정시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간주된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1년 8월 23일 제 12635/CTBDU-TTHT OL)



**CIT:** 직원에 대한 Covid-19 검사 및 백신접종 비용은 제78/2014/TT-BTC호 시행 규칙 제6조, 2항, 2.30점에 의한 규정조건 (제96/2015/TT-BTC호 시행 규칙 제4조에서 개정됨)을 충족하며 인보이스 및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춘 경우 회사의 월 평균 급여 한도로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간주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1년 8월 13일 제31557/CTHN-TTHT호 OL, 2021년 9월 17일 제 35220/CTHN-TTHT 호 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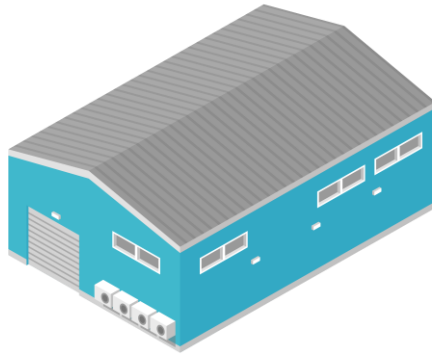
**법인소득세:** 회사가 국립 백신 인증 및 의학 생물 연구소에 VND 20mil 이상인 Covid - 19 검사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은행을 통해 지급 증빙서류 (비현금 지급)를 갖추면 해당 비용이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간주된다.

**소득세:** Covid-19 검사 비용은 계약서, 인보이스 및 관련 증빙서류상 개인 수령자의 이름이 없이 총업원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표시되면 PIT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다.

(Bac Ninh 세무국의 2021년 8월 30일 제2979/CTBNI-TTHT 호 OL)







## “Stay-at-work mode” 관련 비용

**CIT:** “stay-at-work mode”(직원이 회사 현장에서 머무르고 일해야함)과 관련된 비용 (이동, 호텔, 식품, 현금수당 Covid-19 정기 테스트 등의 비용)은 직원에게는 복리부생비로 처리되며 CIT목적으로 공제되지만 회사의 월 평균 급여를 한도로 하고 증빙을 갖춰야 한다.

*(Bac Ninh 세무당국의 2021년 6월 29일 제1883/CTBNI-TTHT호 OL)*

회사가 성급 인민위원회, 산업단지 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Covid-19 예방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안전한 생산 활동을 위해 회사에서 머무르고 일해야 하는 근로자에게 식품, 숙박, 현금 수당, Covid-19 정기 테스트 등의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 **CIT:** 해당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인보이스 및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면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간주된다.
- **PIT:** 해당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상 근로자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고 총업원에게 지급되면 해당비용이 근로자의 PIT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다.

*(Bac Ninh 세무국의 2021년 7월 22일 제2076/CTBNI-TTHT 호 OL)*

회사가 성급 인민위원회, 산업단지 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Covid-19 예방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안전한 생산 활동을 위해 회사에서 머무르고 일해야 하는 근로자에게 식품, 숙박, 3일에 한번씩 정기 Covid-19 테스트 또는 10%, 20% 랜덤 테스트 등의 비용을 지급한다. 근로자에 대한 숙박 및 급식등 과 관련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고 회사에 발행된 인보이스상 총 체류 일수 및 테스트한 샘플 총수량이 명시되는 경우:

- **CIT:** 해당 비용은 비현금으로 지급되며 인보이스 및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면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간주된다.
- **PIT:** 해당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상 개인 수령자의 이름이 없이 총업원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표시되면 PIT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다.

*(Bac Ninh 세무당국의 2021년 8월 31일 제2986/CTBNI-TTHT 호 OL)*

## 수습 근로자에 대한 추가수당이 PIT 부과된다.

**PIT:** 회사가 (의 무 적 인 사 회 . 의 료 . 실 업 보 험 의 부 과 대 상 이 아 닌) 수 습 근 로 자 에 게 추 가 수 당 을 급 여 와 같 이 현 금 으 로 지 급 할 경 우 에 PIT 과 세 소 득 에 포 함 되 어 야 한 다.

(하 노 이 세 무 국 의 2021 년 8 월 19 일 제 32076/CTHN-TTHT 호 OL)



## 격리 비용

**CIT:** 근로계약서 상 회사가 주거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격리시설에 지급된 비용은 인보이스 및 관련 증빙서류가 갖추어진 경우 CIT 과세소득 확정시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간주된다.

(하 노 이 세 무 국 의 2021 년 8 월 13 일 제 31557/CTHN-TTHT 호 OL)

## 전염병 예방 관련 비용

**전염병 예방 관련 비용:** 마스크, 손 소독제 등 구매비용

- **CIT:**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춘 경우 공제 가능;
- **PIT:** 개인이 아닌 단체에 대한 지출비용이 PIT 부과되지 않다.

(하 노 이 세 무 국 의 2020 년 7 월 16 일 제 66297/CT-TTHT 호 OL)

**PIT:** 전염병 예방 관련 비용은 증빙서류상 개인 수령자의 이름이 명확하게 표시되었으면 PIT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하 노 이 세 무 국 의 2021 년 8 월 13 일 제 31557/CTHN-TTHT 호 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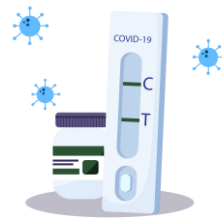
## COVID-19 로 인한 영향을 받은 근로자 및 고용주 대상으로 실업보험 ("UI") 기금에서 지원

1. 2021년 10월 01일 이전에 근로자에 대한 실업보험에 가입 중인 고용주의 경우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12개월간 실업보험 기여률이 1%에서 0%로 감소된다. 근로자의 기존 실업보험 납입율 1%이 그대로 유지된다".
2. 2021년 9월 30일까지 실업보험에 가입 중인 근로자 및 2021년 1월 1일에서 2021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근로계약 해지로 실업보험 가입을 중단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원한다. (연금을 받은 결정서를 발급받거나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받 지않기로 하는 대상에게 적용되지 않음). 실업보험 납입 기간에 따라 VND 1.8mil ~ 3.3 mil의 지원금이 적용된다.

(정부기관의 2021년 9월 24일 제116/2021/NQ-CP 호 결의서)

(총리의 2021년 10월 1일 제28/2021/QĐ-TTg 호 결정서)

(사회보장국의 2021년 10월 1일 제3068/BHXH-CSXH 호 OL)



## COVID-19 관련된 격리, 보호물품 구매, 식사, 숙박, 테스트 등의 비용

해외출장시 Covid-19 상황에 따라 베트남 및 해외에서 격리 비용: 유관기관의 요구에 따라 식사, 숙박, Covid-19 테스트, 베트남 입국장소 또는 격리 대상 발견 장소에서 격리 시설에 이동하는 비용, 격리 기간 동안 기타 생활비등, 근로자용 Covid-19 테스트 비용 또는 테스트 키트 구매 비용, 및 근로자에게 Covid-19 보호물품 구입 비용 및 "Three in-place" (직원이 회사 현장에서 머무르고 일해야 함)과 관련된 식사/숙박 비용에 대해서는 지급 관련 증빙서류가 충분하고 적절하게 갖추어진 경우 CIT상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간주되며 PIT과세소득에 제외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딜로이트의 2021년 10월 29일 Covid-19 관련 비용에 대한 과세 처리에 관한 뉴스를 참조하십시오

(세무총국의 2021년 10월 27일 제4110/TCT-DNNCN 호 OL)



### QUARANTINE EXPENSES

CIT

PIT

- 지원서류가 적합하고 충분한 경우 CIT 목적으로 공제 가능하다;
- 회사가 호텔에 직접 지급한 비용은 주재원의 PIT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다

*(Bac Ninh 세무국의 2020년 7월 6일 제2220/CT-TTHT호 OL)*

- 근로계약서 상 회사가 주거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은 있는 경우, 격리시설에 지급된 비용은 인보이스등 지급 관련 문서가 갖추어진 경우 CIT 과세소득 확정시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간주된다.
- 규정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격리 비용은 문서화되고 인보이스상 외국인 전문가 이름으로 명시되면 PIT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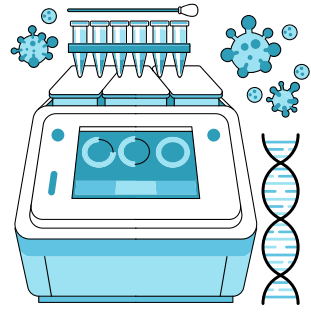
*(Binh Duong 세무국의 2021년 8월 23일 제 12635/CTBDU-TTHT 호 OL)*



## 거주 관련 비용

**PIT:** 하노이에서 주택을 임대한 외국인 주재원은 정부의 전염병 예방 조치에 따라 회사의 생산 및 사업 활동을 위해 Bac Ninh 호텔에서 임시적 거주해야 할 경우 해당 숙박비용은 PIT과세소득에 제외된다.

(Bac Ninh 세무국의 2021년 7월 6일 제2221/CT-TTHT호 OL)



## COVID-19 검사 비용

**CIT:** 외국인 전문가에 대한 Covid-19 검사 비용은 직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복리후생 비용으로 간주되며 규정에 따른 인보이스 및 관련 증빙을 갖춘 경우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간주된다.

(세무총국의 2020년 11월 26일 제5032/TCT-CS호 OL)

**PIT:** 외국인 전문가에 대한 격리 비용, Covid-19 검사 비용은 인보이스상 외국인 전문가 이름으로 명시되면 PIT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1년 8월 23일 제 12635/CTBDU-TTHT 호 OL)



3.

**Covid-19 관련 기타 비용**



### 3.1. Covid-19 예방을 위한 기부/후원 비용

**CIT:** 베트남 내 규정된 단체를 통해 Covid-19 예방 활동을 위한 현금 또는 현물의 형식으로 된 기부금 및 후원금은 충분한 증빙을 갖추면 CIT 계산시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간주된다.

(정부의 2021년 3월 31일 제 44/2021/ND-CP 호 시행령)

(재무부의 2021년 6월 02일 제 41/2021/TT-BTC 호 시행규칙)

### 3.2. CIT 목적으로 고정자산 감가상각

일부 지역 세무국에서는 시행 규칙에 명시된 특정한 경우를 제외 영업정지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가 CIT 목적으로 공제될 수 없는 것으로 안내한 바 있지만, 재무부에 의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안내한 공문에 따르면 "수요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기업이 2020년 과세연에 9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고정자산의 운영을 정지하였다가 다시 생산 및 영업활동에 투입한 경우 계절적 생산으로 인한 일시 정지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해당 감가상각비용은 CIT목적으로 공제 될 수 있다..

(재무부의 2020년 10월 09일 제12452/BTC-TCT호 OL)



4:

출입국



## 4.1. 일반 경우 의료 격리 기간 단축

베트남 입국자는 21일 동안 의료 집중 격리 및 07일 동안 자체 격리 기간 (2021년 5월 5일 제600/CD-BCD호 OL에 따름)은 의료 집중 격리 14일, 그 다음에 14일 동안 자체 격리로 변경된다.

(보건부의 2021년 7월 14일 제5599/BYT-MT호 OL)

## 4.2.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 감염 후 완전히 회복된 개인에 대한 격리 기간 단축

다음 조건을 충족 할 경우, 베트남 입국자는 의료 집중 격리 기간을 7일로 단축하고 그 다음 7일 동안 자체 격리 가능합니다:

1.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SARS-CoV-2에 대한 음성 검사 결과 (RT-PCR/RT-LAMP 방법)가 있고 검사를 수행하는 국가 유관기관에서 인증을 받음;

2. Covid-19 백신 접종 횟수(입국 시점 기준으로 최소 14일 이상 12개월 이내의 마지막 접종)를 충분히 받았고 예방 접종 증명서를 소지함;

혹은:

- 과거에는 SARS-CoV-2 확진자였으나 (입국일 기준 6개월 이내 단일 검체의 RT-PCR 방법에 의한 SAR-COV-2 양성 결과 인증서) 치료 국가 유관기관에서 발급한 코로나 회복 증명서 또는 질병이 회복되었음을 증명하는 유사한 문서가 있어야 함.
-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격리 기간은 여전히 집중적 격리 14일 및 자체 격리 14일 규정이 적용된다.
- 각 지역의 당국은 구체적인 계획과 지침을 공표하여 상기 내용을 수행하도록 한다.

(보건부의 2021년8월4일 제6288/BYT-MT호 OL)

## 4.3. 백신접종 완료 확인서/코로나 회복 증명서 확인.인정에 대한 지침 및 외교부에 의해 인정된 양식 목록 업데이트

제 6288/BYT/MT 호 OL에 따라 격리 안내를 수행하기 위해 영사부는 해외에 소재한 베트남 대표 기관에게 요청한다:

- 백신접종 완료 확인서, 코로나 회복 증명서의 양식이 대표 기관에게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입국자가 베트남에서 이 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표 기관이 영사합법화 절차를 수행한다.
- 백신접종 완료 확인서, 코로나 회복 증명서의 양식은 외교부를 통해 공식적으로 소개된 경우: 대표 기관이 백신 접종 완료한 사람에게 갖고 있는 접종확인서로 입국하여 국내 유관기관이 공식적인 인정된 양식과 비교할 것이다.

영사부는 웹사이트 <https://lanhsuvietnam.gov.vn/>에서 백신 접종 완료 확인서/ 코로나 회복 증명서 양식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한다.

(외교부 영사부의 2021년 8월 6일 제2974/LS-PL호 OL 및 2021년 8월 13일 제3100/LS-PL호 OL)



## 4.4.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서 발급의 조건 완화

베트남 경제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최근의 적극적인 조치들 중 하나로, 2021년 9월 9일에 정부는 Covid-19 시기 동안 기업/ 가족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당국에 지침을 제공하는 제105/NQ-CP호 결의서 ("제105호 결의서")를 발표했다. 제105호 결의서의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정부가 노동보훈사회부 (MOLISA) 및 외무부 (MOFA)에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베트남에 들여오는 것에 대한 제한규제를 완화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담당 직무에 적합한 교육 또는 훈련 경험에 대한 조건이 제거됨;
- 과거에 취득된 노동허가서 (Work Permit) 로 경력을 증명할 수 있음 (결의서상Certificates의 유형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 경험으로 졸업증명서, 기술 자격증은 주로 수락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함);
- 여권 사본만 필요함. 공증에 대한 요구사항이 제거됨
- 다음조건을 만족된 경우 노동허가서를 재발급할 필요가 없음:
  - (i) 기존 노동허가서가 아직도 유효하고 있음;
  - (ii) 파견 기간이 06개월 미만임.

고용주는 이러한 변경을 외국인 근로자가 파견된 지역의 노동국에 통보할 책임이 있음.



#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Son Won Sik**  
KSG Director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Kim Sun June**  
KSG Associate Director  
+84 90 119 7014  
sunjunkim@deloitte.com



**Park Eun Sil**  
Tax Manager  
+84 90 220 4587  
eunsipark@deloitte.com

## Hanoi Office

15<sup>th</sup>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www.deloitte.com/vn](http://www.deloitte.com/vn)

## Ho Chi Minh City Office

18<sup>th</sup>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 2021 Deloitte Vietnam Tax Advisory Company Limited